



## 국민건강보험공단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요양비 관련 협조요청 사항

1.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식품의약품안전처(이하 식약처)는 2021년 6월 12일자로 (주)필립스코리아에서 수입한 양압기(7개 제품) 및 개인용 인공호흡기(4개 제품)에 사용되는 흡음재의 인체 위해 가능성을 경고하는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습니다.
3. 양압기 및 개인용 인공호흡기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근거한 요양비 급여 제공 제품에 해당합니다.
4. 우리 공단은 요양비 수급자의 보건안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 이용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요양비 지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인정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에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요양비 급여 기준 안내 1부. 끝.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

수신자 대한병원협회, 대한의사협회

과장

임현정

팀장

이은숙

부장

전결

6/18

유은선

협조자

시행 급여지급부-2390

(2021.6.18.) 접수

( )

우 26462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1, 5층(반곡동, 로데오 리젠트파크)

/ <http://www.nhis.or.kr>

전화 033-736-3361

전송 033-749-6361 / [cslim@nhis.or.kr](mailto:cslim@nhis.or.kr)

/ 비공개(7)